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추동하면서 디지털 경제시대의 국가경쟁력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갑을문제, 이용자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우선 지원함에 따라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법률 상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가 스스로 또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자율협약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3.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안 제22조의11 제1항)

-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업무 수행의 근거조항 신설

나.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안 제22조의11 제2항, 제3항)

-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및 자율규제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다.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안 제22조의11 제4항)

- 자율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라.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지원 중단,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고려(안 제22조의11 제5항, 제6항, 제7항)

- 민간의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 과기정통부장관과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

에 대한 조치 등 업무 수행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규제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1(자율규제) 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해 자체 또는 별도의 자율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자율협약 등의 제정·개정
2.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
3. 이용자 불만 처리
4.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사회문제 대응 등 상생협력
5.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
6. 그밖에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규제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규제에 기여한 사업자·단체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자율규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자율규제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④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 활동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와 관련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일 것
2. 분야별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율협약 등의 객관성·집행력, 업무수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5항 각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자율규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11제5항부터 제6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2조의11(자율규제) 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 협력을 위해 자체 또는 별도의 자율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p> <p><u>②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자율협약 등의 제정 · 개정</u> <u>2.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u> <u>3. 이용자 불만 처리</u> <u>4.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사회문제 대응 등 상생협력</u> <u>5.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u> <u>6. 그밖에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u>

도모하는 활동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규제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규제에 기여한 사업자·단체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자율규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자율규제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④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 활동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와 관련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일 것

2. 분야별 부가통신사업자를 대
표할 수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율협
약 등의 객관성·집행력, 업무
수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5항 각호에 따른 지원요건
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자율규제 업무를 적
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
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자율규
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635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연 락 처	(02) 2110 - 1514